



의안번호	제 2022 - 15호
보 고 연 월 일	2022. 7. 4. (제117차 정기회의)

보  
고  
안  
건

## 전문위원 업무보고

제 출 자	수석전문위원
-------	--------





# 목 차

I. 제147차 전체회의 .....	1
1. 일시·장소 .....	1
2. 참석자 .....	1
3. 주요 안건 .....	1
II.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의견(관계기관, 행정예고) 등 검토 .....	2
1. 유형분류 .....	2
2. 권고 형량범위 .....	2
3. 양형인자 .....	3
4. 집행유예 기준 .....	21
5. 명백한 오기 등 수정 .....	23
III. 향후 일정 .....	24

## 【별첨】

이재신,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관계기관 의견 검토”  
최재아,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관계기관 의견 검토 ”



# I. 제147차 전체회의

## 1. 일시·장소

- 일시: 2022. 6. 20.(월) 16:00 ~ 18:12
- 장소: 대법원 404호 회의실

## 2. 참석자(수석전문위원 1명, 전문위원 13명, 간사 1명)

- 수석전문위원, 김한울, 김형찬, 김혜경, 김희연, 박복순, 박성훈, 이재신, 최익구, 최재아, 최준혁, 최형준, 한상규, 홍진영 전문위원(이상 가나다 순)
- 운영지원단장(간사)

## 3. 주요 안건

-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의견(관계기관, 행정예고) 등 검토

## II.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의견(관계기관, 행정예고 등 검토)

### 1. 유형분류

가. 의견 요지: ‘아동·청소년 공박 상태 이용 간음·추행’ 별도 분류

아동·청소년 공박 상태 이용 간음·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인지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경제적 사정으로 위축되어 있다는 점에서 장애인 대상 성범죄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움. 향후 별도 양형기준이나 분류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대한변호사협회)

나. 논의 결과 ⇨ 수정안 유지(의견 일치)

- 청소년성보호법 제8조의2(아동·청소년 공박 상태 이용 간음·추행)는 그 신설 취지, 규정의 배치, 체계 및 내용 등을 고려할 때, 같은 법 제8조(13세 이상 장애 아동·청소년 간음·추행)와 같이 ‘장애인(13세 이상) 대상 성범죄’의 유형 중 하나로 분류하는 것이 적절함

### 2. 권고 형량범위

가. 의견 요지: 법정형에 맞는 기본 형량범위 설정

일반강간 등 성범죄 양형기준상 기본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정형의 하한보다 낮게 설정되었으나, 최소한 법정형의 하한 이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함(한국YWCA연합회)

나. 논의 결과 ⇨ 수정안 유지(의견 일치)

- 기본영역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정형의 하한보다는 낮으나, 양형 실무를 고려하여 작량감경에 따른 처단형의 하한보다는 높은 형을 권고하고 있고, 성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규범적 조정을 통해 법정형이 유사한 다른 범죄에 비하여 높은 형량범위를 권고하고 있음

### 3. 양형인자

#### 가. 특별감경인자

##### (1) 청각 및 언어 장애인

###### (가) 의견 요지: 제한적 적용

일률적으로 특별감경인자로 반영하는 것은 오히려 차별적 요소가 될 여지가 있음.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만 적용하는 것이 타당함(한국가정법률상담소)

###### (나) 논의 결과 ⇨ **현행 유지(의견 일치)**

- 형법 제11조에서는 청각 및 언어 장애인의 행위에 대하여 사물변별능력 등의 정도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필요적 감경사유로 정하고 있음

##### (2) 처벌불원

###### (가) 의견 요지: 일반감경인자로 반영 등

- ① 피해자가 추가적인 범의 침해를 방지하고자 불가피하게 처벌불원 의사표시를 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처벌불원이 형량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디지털 성범죄와 같이 처벌불원 인자는 특별감경인자가 아닌 일반감경인자로 반영하여야 함(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YWCA연합회)
- ②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하는 것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함. 처벌불원과 상당한 피해 회복을 별개의 양형인자로 분리하기보다는 ‘피해 회복’을 양형인자로 하고 그 요건을 구체화(처벌불원, 물질 보상, 정신적 회복, 피고인의 사죄 등)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각급 법원)
- ③ 향후 피해자와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에 관한 의사가 상반되는 경우에 관한 판단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대한변호사협회)

###### (나) 논의 결과 ⇨ **수정안 유지(의견 일치)**

- 이번 제8기 양형위원회에서는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원칙’을 의결하여, 합의 관련 양형요소를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처벌불원,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등으로 구분하고, 보호법익 등 각 범죄군의 특성을 감

안하여 양형인자와 집행유예 참작사유에 위 합의 관련 양형 요소를 규정하는 방식으로 정비하였음

- 이에 따라 성범죄의 경우 처벌불원은 특별감경인자로 유지하기로 하였는바, 처벌불원의사 인정요건의 강화 및 그 해당 여부에 대한 충실한 양형심리를 통해 위와 같은 우려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 적절함
- 처벌불원 의사표시 관련 구체적인 조사지침이나 판단기준 등은 사안의 성격이나 피해자 측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개별 사건에서 정할 재판사항에 해당하고, 양형실무가 축적되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

## 나. 특별가중인자

### (1) 동종 누범 및 전과 관련

#### (가) 의견 요지: 동종 범위 확대

동종의 범위에 성범죄뿐만 아니라 성매매범죄, 디지털 성범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범죄도 포함하는 것이 관련 범죄군에 대한 양형기준 사이의 균형에 부합할 것으로 보임(각급 법원)

#### (나) 논의 결과 ⇨ 견해 대립

제1안(11인)	제2안(1인)	제3안(1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성매매범죄, 디지털 성범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범죄, 추행·간음·성매매·성적착취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디지털 성범죄 포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별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누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성매매범죄, 디지털 성범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범죄, 추행·간음·성매매·성적착취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포함,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디지털 성범죄 포함, 집행종료 후 10년 미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가중인자] 특정범죄가중(누범)·특정강력범죄(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이중 누범, 누범에 해당하지 않는 동종 및 폭력 실행전과(집행종료 후 10년 미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의규정]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범죄, 성매매범죄, 디지털 성범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범죄, 추행·간음·성매매·성적착취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의규정]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정의규정]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범죄로 인한 전과를 의미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성매매범죄, 디지털 성범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범죄, 추행·간음·성매매·성적착취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포함,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디지털 성범죄 포함, 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행유예 주요참작사유] 동종 전과(10년 이내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성매매범죄, 디지털 성범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범죄, 추행·간음·성매매·성적착취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포함)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디지털 성범죄 포함)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동종 전과 없고, 금고형의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li> </ul>

㉔ 제1안: 동종 범위 확대(11인)

- ① 성매매범죄, 디지털 성범죄,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범죄에서 누범 및 전과 관련 '동종'의 범위에 성범죄를 포함하고 있는 점, ② 성폭력처벌법에서는 ㉔ 형법 제242조(음행매개), 제243조(음화반포등), 제244조(음화제조등)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를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바, 양



형기준이 설정된 성매매범죄, 디지털 성범죄 대부분이 포함되고, ㉠ 또한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 목적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도 성폭력범죄로 규정하고 있는바, 양형기준이 설정된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중 일부가 포함되는 점, ㉡ 누범 또는 실행전과로서 성범죄 관련 경향성,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동종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적절함

-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매매범죄: ① 성을 파는 행위 강요 등, ② 성매매 알선 등, ③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④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강요 등, ⑤ 아동·청소년 대상 성매매 알선 등
- 양형기준이 설정된 디지털 성범죄: 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 ② 카메라등이용촬영, ③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 등, ④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 ⑤ 통신매체이용음란
- 양형기준이 설정된 아동복지법상 성적 학대범죄: 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 양형기준이 설정된 약취·유인·인신매매범죄: ① 약취·유인·인신매매(은닉·국외이송·모집·운송·전달 포함)만 한 경우, ② 약취·유인·인신매매 후 피해자의 신체를 침해한 경우, ③ 약취·유인 후 재물 등을 요구·취득한 경우, ④ 약취·유인·인신매매 후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제2안: 디지털 성범죄만 포함(1인)

- 동종 누범의 범위를 너무 확대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으나, 적어도 디지털 성범죄는 성범죄의 틀로 포섭될 수 있는 성격의 범죄임
- 디지털 성범죄에서도 누범 및 전과 관련 '동종'의 범위에 성범죄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를 포함하는 것이 타당함

㉡ 제3안: 현행 유지(1인)

- 성범죄 양형기준에서는 다른 양형기준과 달리 애초에 '양형기준이 설정된 성범죄'로 동종 전과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

므로,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것에는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성범죄가 성매매범죄 등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되고 있는 점을 볼 때, 성매매범죄 등에서 성범죄를 동종 취급하여 가중하는 것과 성범죄에서 성매매범죄 등을 동종 취급하여 가중하는 것은 다르게 볼 수 있음. 성매매범죄 등 전과와 성범죄 전과는 그 성격이나 맥락이 다르므로, 동종 전과의 범위를 성범죄로 한정하는 현행 기준 유지

## (2)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의 정의

### (가) 의견 요지: 정의규정 중 일부 삭제

- ① 정의규정 중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명시적으로 피고인의 직무상 권한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중 괄호 부분은 위 양형인자 적용에 걸림돌이 될 수 있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한국성폭력상담소)
- ② 위 괄호 부분 중 '명시적으로' 부분은 피해자에게 입증책임의 부담이 지워질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음(여성가족부)

### (나) 논의 결과 ⇨ 견해 대립

수정안(7인)	현행 유지안(6인)
●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관(군형법 제2조 제1호 전단의 상관을 의미한다)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 <del>명시적으로 피고인의 직무상 권한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del> )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범행을 수월하게 한 경우를 의미한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상관(군형법 제2조 제1호 전단의 상관을 의미한다)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여(명시적으로 피고인의 직무상 권한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 피해자에게 압력을 가하여 범행을 수월하게 한 경우를 의미한다.

### ㉠ 다수의견(7인): 괄호 안 문구 삭제

- 현재 양형기준은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예시로 '명시적으로 피고인의 직무상 권한 또는 영향력을 행사'한 경우 한 가지만을 적시하고 있어, 묵시적인 방법으로 상관의

지위를 이용한 경우 위 양형인자에 포섭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지 의문임. 괄호 안 문구가 유지되는 경우, 위 양형인자에 포섭될 수 있는 '묵시적인 경우'가 무엇인지도 상정하기 어려움

- 괄호 안 문구는 예시규정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위 정의규정은 예시 기재내용으로 인해 오히려 해당 인자가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되어 그 적용이 축소될 우려가 있으므로, 괄호 부분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양형기준에 의할 경우 피고인이 상관이 지위에 관하여 피해자에게 언급을 하였다는 증거가 있어야 양형인자에 포섭할 수 있을 것임
- 위 양형인자는 해석상 '명시적으로'가 아니라 '명백하게'의 뜻으로 쓰인 것으로 보이는데, '명시적으로'라는 문구를 그대로 두게 되면 오해의 소지가 있음

㉞ 소수의견(6인): 현행 유지안

- 위 괄호 부분은 균형법상 성범죄의 특별가중인자로서 피고인이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경우를 설명하기 위한 예시이고, 묵시적인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 위 양형인자에 포섭될 수 있는바, 위 괄호 부분을 삭제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임
- 위 양형인자 문구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와 연결되어 있어, 상관의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하지 않았더라도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로의 포섭이 가능함
- 수정안에 의하면, 균형법상 성범죄에서 상관의 지위를 가진

것만으로 형량이 가중되는 요인이 되는 것처럼 오해될 여지도 있음

### (3)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 (가) 의견 요지: 양형인자 명칭, 정의규정 수정

- ① 그루밍을 통한 성범죄 등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이나 불쾌감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가학적·변태적 침해행위 또는 일반인에게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② ‘극도의 성적 불쾌감 증대’ 로 변경하고, 제3자의 시선, 사회상규, 규범 등을 기준으로 한 정의규정도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음(한국성폭력상담소)

#### (나) 논의 결과 ⇨ 수정안 유지(의견 일치)

- 위 양형인자는 성범죄의 구성요건적 행위 외에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침해 정도가 심하거나 피해자의 성적 불쾌감 등 정신적 고통의 정도가 매우 큰 행위가 수반된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한 것임(살인, 폭력 등 범죄에서의 잔혹한 범행수법에 비견할 만한 것임)
- 이번 수정안은 ‘성적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성적 불쾌감’으로 변경함으로써 성범죄의 피해자가 실제로 갖게 되는 피해 감정을 고려하도록 한 것인바(성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되는 형법 또는 형사특별법상 성범죄의 경우 ‘성적 수치심’이 구성요건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 위 양형인자 전체의 명칭이나 정의규정까지 수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임

### (4)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가) 의견 요지: 정의규정 예시 추가

- 개인 간의 권력 불균형이나 심리적 지배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자를 포섭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는바, 이에 대한 고려가 더 필요함(한국여성변호사회)

(나) 논의 결과 ⇨ **현행 유지(의견 일치)**

- 위 양형인자의 정의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피해자의 장애, 연령, 조직이나 단체 내 관계는 예시적 열거인바, 양형심리결과 개인 간의 권력 불균형이나 심리적 지배 등으로 인하여 성범죄에 취약하였다고 평가되는 경우에는 위 양형인자에 포섭될 것으로 보임(한편 사안에 따라서는 '인적 신뢰관계 이용'에 포섭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임)

(5) 윤간

(가) 의견 요지: 양형인자 명칭 수정, 적용범위 확대

'집단 범행'으로 변경하고, 일부 유형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해제할 필요가 있음(한국성폭력상담소)

(나) 논의 결과 ⇨ **현행 유지(의견 일치)**

- 위 양형인자는 가중적 구성요건인 성폭력처벌법상 특수강간에 관한 것으로, 그 법정형에 상응하는 높은 형량범위를 권고하는 한편, 그 범행과정에서 '윤간'에까지 이른 경우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한 것인바, 위 양형인자의 명칭이나 적용범위를 수정할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임

(6) 다수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가) 의견 요지: 1인의 피해자에 대한 경우도 추가, 정의규정 수정 등

- ① 1인의 피해자에 대한 계속적·반복적 범행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할 필요가 있음(한국YWCA연합회)
- ②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에서 '3인 이상 피해자'의 경우 실형을 권고하는 것과 같이 특별양형인자에 있어서도 현행 '5인 이상'을 '3인 이상'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여성가족부)

(나) 논의 결과 ⇨ **현행 유지(의견 일치)**

- 위 양형인자는 다수 피해자(정의규정상 5인 이상)를 상대로 한 성범죄를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한 것인바, 1인의 피해자에 대한 계속적·반복적 성범죄는 실체적 경합범으로서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의하여 가중된 권고 형량범위를 적용함으로써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고, 사안에 따라서는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에 포섭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임
- 성범죄 양형기준의 수정 경과를 보면, ‘다수 피해자(정의규정상 5인 이상)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이 특별양형인자로 추가 반영된 후, 집행유예 참작사유의 평가원칙에 실행권고 사유를 추가로 마련하면서 ‘3인 이상 피해자 대상 계속적·반복적 범행’ 등(13세 미만 대상 강간, 장애인 대상 강간 등)이 규정되었는바, 특별양형인자와 실행권고사유는 그 취지나 위상 등이 다르고, 양형실무에도 이미 안착한 상태인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이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함

다. 일반감경인자

(1) **진지한 반성**

(가) 의견 요지: 삭제, 정의규정 예시 제시 등

- ① 피해자의 처벌불원이나 용서 등과 관련이 없는 위 양형인자는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한국성폭력상담소)
- ② 재판부에 보이기 위한 형식적, 관행적인 결과물이 될 가능성이 농후함.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가중인자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함(한국가정법률상담소)
- ③ 정의규정에 구체적 예시를 제시하여 남용의 여지를 최소화하여야 함(한국여성변호사회)
- ④ ‘진지한 반성’을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임. 재판부가 반성문이나 기부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여 형량을 감경하는 것은 극도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함(한국여성정책연구원)
- ⑤ ‘진지한 반성’에 기부가 인정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기를 바람(한국여성의전화)
- ⑥ 피해자를 위한 피해회복 조치는 하지 않고, 감형을 목적으로 반성문이나 기부 자료 등을 제출하

고, 선고 이후에는 기부를 중단하는 등 악용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반성문과 기부자료 제출은 제외하여 엄격하게 적용할 필요(여성가족부)  
 ⑦ 반성문이나 기부로 인한 감형에 대한 비판을 고려하여 정의규정에 ‘(추가 사정이 없는 반성문 및 기부자료 제출은 제외)’ 추가 필요(법무부)

(나) 논의 결과 ⇨ 견해 대립

수정안 유지(7인)	추가 수정안(6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범행을 인정한 구체적 경위, 피해 회복 또는 재범 방지를 위한 자발적 노력 여부 등을 조사, 판단한 결과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u>다만, 사실상 같은 내용의 반성문이 다수 제출되었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조치 없이 기부자료가 제출된 때는 포함하지 않는다.</u></li> </ul>

㉠ 다수의견(7인): 수정안 유지

- 이번 제8기 양형위원회에서는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시부터 위 양형인자의 남용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하여 범죄군 전반에 걸쳐 적용될 수 있는 표준 정의규정을 마련하였음
- 위 양형인자의 삭제 여부 등은 양형기준 전반에 걸친 문제이고, 영국, 독일, 일본 등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진지한 반성’, ‘반성, 성찰, 자백’ 또는 ‘진심 어린 사죄’를 감경사유로 고려하고 있음
- 진지한 반성 인정요건의 강화 및 그 해당 여부에 대한 충실한 양형심리를 통해 위와 같은 우려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고, 양형실무가 축적되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이번 수정안의 정의규정에 의할 때 다수의 반성문이 제출되

었다거나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조치 없이 기부자료가 제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진지한 반성'으로 평가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바, 위 양형인자의 해당 여부에 대한 해석과 판단은 개별 사건에서 양형기준을 적용하는 법관에게 맡기는 것이 적절함

- '진지한 반성'을 인정하는 데 성범죄에만 추가 요건을 신설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남
- 자력이 없는 피고인에게는 사실상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 외에 달리 반성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어려운데, 추가 수정안과 같은 단서조항을 두는 것은 가혹함

#### ㉞ 소수의견(6인): 단서 조항 추가

- 다수의 반성문 제출만으로도 감형이 된다는 일반의 인식을 불식하고, 피고인이 아무런 피해회복도 하지 않으면서 감형받기 위해 반성문만 제출하는 현실을 개선할 필요가 큼<sup>1)</sup>
- 최근 피고인이 기부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받자마자 기부를 중단하거나, 실형을 면하고자 청첩장을 조작하거나, 피해자를 강요하여 합의서를 받아내는 등 부당하게 양형자료를 이용하고, 특히 성범죄자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다수의 언론에서 이를 지적하고 있는 상황임
- 인터넷상 공유되는 양형자료 목록이 90여 개에 이르는 상황에서 재판부가 제출된 양형자료들의 진위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부당한 양형자료를 근거로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으로 오인하여

---

1) 반성문 대필사업이 공공연하게 성행하고 있음. 반성문 대필 전문 사이트만 33개에 달함



선처하게 될 여지도 있음

- 그와 같은 경우 성범죄자들에게 ‘감형 꿀팁’으로 대물림될 우려가 있고, 실제로 성범죄자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성공 사례’ 공유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음
- 이에 ‘모든 관계기관’에서 악용 사례나 사회적 비판을 지적 하면서, ①특히 ‘반성문, 기부자료 등’을 적용제한 사유로 추가하거나, ②구체적 예시를 제시하여 남용을 막거나, 나아가 ③감경인자에서 삭제하거나, ④가중인자로 적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실정임
- 따라서 현재와 같이 개별 사건에서 법관의 해석과 판단을 맡기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안일한 인식으로는 위와 같은 현실에 대처하기 부족하므로, 관계기관들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여 적용제한 사유를 규정함이 타당

## (2)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가) 의견 요지: 삭제, 양형인자 명칭 수정 등

- ①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 유지한다면 ‘피해자의 동의 없는 공탁 제외’ 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하거나 ‘피해자의 상당한 피해 정도’ 를 신설할 필요가 있음(한국성폭력상담소)
- ② 피해자 측이 부당한 합의 파탄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를 고려하여 피고인의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공탁 및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대한변호사협회)
- ③ 피해자의 처벌 의사에도 불구하고 위 양형인자를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한 정의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각급 법원)
- ④ 가해자 측의 일방적인 공탁이 피해 회복에 기여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감경사유로 고려하는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여성가족부)

### (나) 논의 결과 ⇨ 수정안 유지(의견 일치)

- 위 양형인자는 이번 제8기 양형위원회에서 의결한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원칙’에 따른 것으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의규정을 두지 않았는바, 양형실무가 축적되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는 못 미치되, 양형에서 유의미하게 고려할 만한 수준의 피해 회복을 핵심요소로 하는데, 이와 같은 기준을 다양한 범죄에 걸쳐 일관되게 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움
- 설령 정의를 두더라도, 추상적인 기준의 선언에 그칠 수밖에 없기에 그 실효성이 크게 떨어짐
- 해당 인자의 판단기준은 결국 사회통념상 피해 회복의 「상당성」이므로, 불완전한 정의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양형 재량권 행사를 통하여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3)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가) 의견 요지: 삭제

피해가 회복되기 어렵고 장기간 지속되는 등 성범죄로 인한 피해의 중대성과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위 양형인자는 삭제하는 것이 적합함(한국가정법률상담소, 한국성폭력상담소)

#### (나) 논의 결과 ⇨ 수정안 유지(의견 일치)

- 제7기 양형위원회에서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안 의결시부터 일반감경인자로서 반영할 만한 초범의 의미를 분명히 하는 차원에서 범죄군 전반에 걸쳐 적용될 수 있는 표준 정의규정을 마련하였음
- 위 양형인자의 삭제 여부는 양형기준 전반에 걸친 문제이고, 영국, 미국, 독일, 일본 등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전과 없음’을 감경사유로 고려하고 있음
- 형사처벌 전력 없음 인정요건의 강화 및 그 해당 여부에 대한 충실한 양형심리를 통해 위와 같은 우려를 해소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고, 양형실무가 축적되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성범죄로 인한 피해의 중대성과 특수성 등은 현행 양형기준에 의할 때 규범적 조정을 통한 높은 형량범위의 권고, 특별감경인자의 최소 설정 등으로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라. 일반가중인자

### (1)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 (가) 의견 요지: ‘2차 피해 야기’로 확대 등

- ① 특별가중인자(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로 반영하고, 그 대상을 확대(피해자,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등)할 필요가 있음(한국가정법률상담소)
- ② ‘범행사실을 공개하거나 공개할 의사를 표명하거나 압력을 가하는 경우’ 를 포함하여 위 양형인자에 포섭될 수 있는 예시를 추가할 필요가 있음(대한변호사협회)
- ③ 여성폭력방지기본법상 ‘2차 피해’ 의 정의규정을 참고하여 합의과정에서의 2차 피해뿐만 아니라 범죄 후 재판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가중인자로 포섭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와 고민이 필요함(한국여성변호사회)
- ④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의 경우 뿐만 아니라 합의 시도와 무관하게 야기된 다양한 형태의 2차 피해로 인한 피해 심각,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 인사상 불이익 등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 추가 필요(여성가족부)
- ⑤ 현재 양형기준은 ‘합의 시도’ 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2차 피해를 포섭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행위,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 등 성범죄 이후 피해자에 대하여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일체를 일반가중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반영할 필요 있음(법무부)

#### (나) 논의 결과 ⇨ 견해 대립

수정안 유지(8인)	추가 수정안(5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가중인자 및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del>피해자 등에 대한 강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del>)(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li> <li>● [정의규정]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b>범행</b></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반가중인자 및 집행유예 일반참작사유] 2차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li> <li>● [정의규정]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여 범행 이후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를 의미한다.</li> </ul>

<p><del>사실을 공개하거나 공개할 의사를 표명하여 압력을 가하거나, 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강요한 경우를 의미한다.</del>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li> <li>- 피해자의 인적사항 공개,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 피해자에 대한 모욕적 발언, 집단 따돌림 등을 한 경우</li> <li>- 그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li> </ul>
--	--

㉑ 다수의견(8인): 수정안 유지

- 위 양형인자는 이번 제8기 양형위원회에서 의결한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원칙’에 따른 것으로, 피해자가 있는 범죄군 전반에 걸쳐 일반가중인자 겸 집행유예 일반부정사유로 정비하면서 표준 정의규정을 마련한 것임
- 합의와 전혀 무관하게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의 직계혈족이나 배우자 등에 대한 피해 야기, 범행사실의 공개 등은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에 대부분 포섭될 것으로 보이며, 한편 성폭력처벌법 제50조에서는 같은 법 제24조 위반행위(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금지의무 위반,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 공개)를 처벌하고 있는바, 양형실무가 축적되는 상황을 지켜볼 필요가 있음
- 양형기준은 모든 사례를 포섭하는 것이 아니라 전형적인 사례를 포섭하는 것으로 기존 수정안처럼 2차 피해의 전형적인 사례를 포섭하는 정도면 충분
- 추가 수정안은 성립 범위가 너무 넓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가 불리한 양형인자로 평가받을 여지가 있음

㉔ 소수의견(5인): 추가 수정

-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2차 가해'를 양형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에 반영할 시의성 및 필요성이 큼
- 현재 일반가중인자로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가 규정되어 있고, 이번 수정안에서 일부 수정된 부분이 있으나, '합의 시도'와 무관하게 발생하는 다양한 형태의 2차 가해를 포섭하지 못하고 있음
- 가해자가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행위, 신고에 대한 불이익조치 등 성범죄 이후 피해자에 대하여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일체를 일반가중인자 및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반영할 필요 있음<sup>2)</sup>
- 관계기관들도 대부분 특히 성범죄에 관하여는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외에 다른 2차 피해들을 가중인자로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
- 이에 대해 다수의견은 ①합의와 전혀 무관하게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는 드물 것으로 보이므로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

2)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가. 수사·재판·보호·진료·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신체적·경제적 피해  
나.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다.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1) 파면, 해임, 해고, 그 밖에 신분상실에 해당하는 신분상의 불이익조치  
2) 징계, 정직, 감봉, 강등, 승진 제한, 그 밖에 부당한 인사조치  
3) 전보, 전근, 직무 미부여, 직무 재배치, 그 밖에 본인의 의사에 반하는 인사조치  
4) 성과평가 또는 동료평가 등에서의 차별과 그에 따른 임금 또는 상여금 등의 차별 지급  
5) 교육 또는 훈련 등 자기개발 기회의 취소, 예산 또는 인력 등 가용자원의 제한 또는 제거, 보안정보 또는 비밀정보 사용의 정지 또는 취급 자격의 취소, 그 밖에 근무조건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차별 또는 조치  
6) 주의 대상자 명단 작성 또는 그 명단의 공개,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  
7) 직무에 대한 부당한 감사 또는 조사나 그 결과의 공개  
8) 인허가 등의 취소, 그 밖에 행정적 불이익을 주는 행위  
9) 물품계약 또는 용역계약의 해지, 그 밖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조치

피해를 일으킨 경우'에 대부분 포섭될 수 있고, ②성폭력처벌법에 일부 처벌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2차 피해를 가중인자로 추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임. 그러나, ①2차 피해의 다양한 형태 중에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는 일부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하고(성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가 많아,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면서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2차 피해를 가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됨), 다른 유형의 2차 피해 야기는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일으킨 경우'에 포섭된다고 볼 수 없음

- 같은 형태의 2차 피해가 야기되었을 때, '합의 시도 중에 야기된 것인지' 아니면 '그 외의 경우에 야기된 것인지'에 따라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피해자를 비방하면서 2차 피해를 야기한 경우의 죄질이 더욱 불량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또한, ②성폭력처벌법은 다양한 형태의 2차 피해 중 일부에 대하여만 처벌 규정을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가중인자는 다른 규정에 따라 처벌되지 않았을 때 적용되는 것이 명백하고, 특히 기존안에도 '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단서가 있으므로, 처벌규정의 존재를 반대논거로 삼는 것은 그 자체로 모순
- 설사 성폭력처벌법상 처벌대상 행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반드시 적용가능한 모든 규정을 적용하여 기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닐 뿐더러, 기소 이후에 발생한 경우에는 병합기소가 이루어질지 여부도 불분명하여 결국 2차 피해 야기 범행에 대해 실제 형사처벌이 이루어질지 불분명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외 다른 2차 피해를 가중인자로 추가할 실익이 있음

## (2) 인적 신뢰관계 이용

### (가) 의견 요지: 양형인자 명칭 수정 등

‘인적 신뢰지위 이용’으로 변경하고, 예시 중 ‘환자’를 ‘환자 및 내담자’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함(한국성폭력상담소)

#### (나) 논의 결과 ⇨ 수정안 유지(의견 일치)

- 일리 있는 측면도 있으나, 현행 양형인자의 명칭이나 정의규정의 예시를 수정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보임

## (3) 친족관계인 사람의 범행

### (가) 의견 요지: 특별가중인자로 반영

구성요건적 요소가 아닌 경우에도 특별가중인자로 반영되는 것이 타당함(한국가정법률상담소)

#### (나) 논의 결과 ⇨ 수정안 유지(의견 일치)

- 위 양형인자는 성범죄 양형기준의 유형분류와 권고 형량범위의 설정 및 수정 과정에서 그 위상이 변경되어 왔음
- 이번 수정안에서의 유형분류와 권고 형량범위의 수정 내용에 의할 때, 그 처벌규정의 구성요건, 법정형, 체계 및 관계 등을 고려하면 위 양형인자의 경우 구성요건적 요소는 아니지만 ‘친족관계인 사람의 주거침입 등 강간 또는 특수강간 범행인 경우’에는 특별가중인자로 반영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일반가중인자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4. 집행유예 기준

### (1)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 (가) 의견 요지: 삭제 등

- ① 사회적 유대관계만으로는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므로 재고할 필요가 있음. 부정사유로 반영하는 전과와 비교하여 사회적 유대관계보다 신빙성 있고 구체적인 지표를 개발하는 것이 필요함(한국YWCA연합회)
- ② 삭제하는 것이 타당함(한국성폭력상담소)
- ③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고, 다만 참작사유로 둔다면 보다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정의규정을 마련하여 보완할 필요가 있음(여성가족부)

#### (나) 논의 결과 ⇨ **현행 유지(의견 일치)**

- 위 참작사유의 삭제 여부는 양형기준 전반에 걸친 문제이고, 사회적 유대관계를 집행유예 결정 단계에서 고려하는 것은 재범의 위험성이나 사회복귀의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며, 성범죄에서만 위 참작사유의 적용을 배제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음
- 독일, 일본 등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사회적인 유대관계’, ‘근친, 고용주 등에 의한 감독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 등을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고려하고 있음

### (2) 우발적 범행

#### (가) 의견 요지: 타당성 검토 필요

‘우발적’의 의미가 모호하여 계획적 범행이 아니면 우발적 범행으로 분류되어 집행유예 긍정사유로 참작되고, 이는 양형기준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게 작용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위 참작사유가 타당한지 검토가 필요함(한국YWCA연합회)

#### (나) 논의 결과 ⇨ **현행 유지(의견 일치)**

- 현행 양형기준상 계획적 범행은 일반가중인자 겸 집행유예 주요부정사유, 우발적 범행은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로 규정



되어 있고, 아래와 같은 정의규정이 마련되어 있음

피해자를 유인하거나 심신미약의 상태에 이르도록 하는 등 범행의 계획 또는 사전준비가 없고, 범행의사 없이 다른 목적으로 피해자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비로소 범행의사를 가지고 저지른 범행을 의미한다.

- 다수의 범죄군(방화, 폭력, 업무방해, 약취·유인·인신매매 등)에서 집행유예 일반긍정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재범의 위험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함

### (3) 피고인이 고령

#### (가) 의견 요지: 존치

피고인이 형을 감당할 수 있는지 고려할 필요 있음. 디지털 성범죄와 동일하게 위 사유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음. 건강 등 다른 문제가 있을 때에만 참작하도록 하거나 고령에 해당하는 연령을 정하거나(70세, 80세 등) 범죄유형에 따라 별도로 적용하게 하는 것이 타당함(대한변호사협회)

#### (나) 논의 결과 ⇨ 수정안 유지(의견 일치)

- 위 참작사유는 그 의미의 불명확성, 재범 위험성과의 관련도에 관한 근거 부족 등을 이유로 제7기 양형위원회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의결함(디지털 성범죄 등)
- 재범의 위험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참작사유의 하나로 '고령'에 해당하는 연령을 구체화하거나 특정할 만한 근거를 찾기 어렵고, 한편 수형능력 등과도 관련된 '피고인의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않음'은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이미 반영되어 있음

#### (4)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

##### (가) 의견 요지: 신중 검토 필요

성범죄로 인한 피해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위 사유를 긍정사유로 참작할 필요성이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여성가족부)

##### (나) 논의 결과 ⇨ **현행 유지(의견 일치)**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시 가해자 대부분이 보호자인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위 참작사유가 삭제되기는 하였으나, 위 참작사유의 삭제 여부는 양형기준 전반에 걸친 문제이고, 위 참작사유를 집행유예 결정 단계에서 고려하는 것은 사회복귀의 가능성 등을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며, 성범죄에서 위 참작사유의 적용을 배제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음
- 영국, 미국, 일본 등 비교법적으로 보더라도 '피부양 친족에 대한 유일하거나 주된 보호자', '피고인이 없으면 생계가 불가능하거나 간호·양육에 대한 지장이 심할 경우' 등을 집행유예 참작사유로 고려하고 있음
- 성범죄로 인한 피해의 중대성 등은 현행 양형기준에 의할 때 규범적 조정을 통한 높은 형량범위의 권고, 특별감경인자의 최소 설정, 집행유예 참작사유 평가원칙에서의 실행권고 사유 등으로 엄중한 처벌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5. 명백한 오기 등 수정

- 유형의 정의에 누락된 "강간 등 치사(청소년성보호법 제10조 제2항)" 추가

### Ⅲ. 향후 일정

- 일시: 2022. 7. 25. (월) 오후
- 장소: 대법원 1601호 회의실
- 안건
  - 관세범위반범죄 양형기준 심의(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
  - 정보통신 및 개인정보 관련 범죄 양형기준 심의(설정 범위 및 유형 분류)